

| | |
|---|---|
|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. ○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겸토보 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| ○ 전문위원 정천현 전문위원 정천 현입니다. 충청북도 지방재정제회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겸토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. |
|---|---|

〈참 조〉

忠清北道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檢 討 報 告

1. 提出者 : 忠清北道知事

2.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

- 가. 提出日字 : 1992年 4月 1日
나. 回附日字 : 1992年 4月 1日

3. 提案理由

- 地方財政法 第16條의 2의 規定에 依據 地方財政計劃 審議委員會 條例를
制定, 運營도록 되어있음.
○ 内務部에서 示達된 準則에 依하여 忠清北道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 條
例를 制定코자 함.

4. 主要骨子

- 構 成
- 委 員 長 : 副知事
- 副委員長 : 企劃管理室長

一 委 員 : 關聯室·局長, 地方議會議員, 專門分野教授, 地域代表等
으로 構成하여 道知事が 委嘱한者

- 機 能 : 地方財政計劃樹立에 關한 道知事의 諮問에 應答.
 - 地方財政 運營方向에 關한 事項
 - 財源調達에 關한 事項
 - 投資事業 樹立에 關한 事項
 - 其他 道知事が 附議하는 事項

5. 檢討意見

地方財政計劃의 權威와 實効性을 確保하기 為하여

- 地方財政法 第16條의2 規定에 依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서 地方財政
計劃 審議委員會條例를 制定 運營도록 되어있으며
- 内務部에서 示述된 準則에 依하여 忠清北道 地方財政計劃 審議委員會
條例를 制定코자 하는 것으로서
- 地方財政 運營方向에 關한 事項이나 投資事業樹立, 地方財政計劃 樹立에
關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役割, 機能履行을 위하여 忠清北道地方財
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를 制定할 必要성이 認定되는바 本 條例案의 制定
은 要當하다고 思料된.

6. 添 附

忠清北道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| 현 행 | 개 정 |
|---|--|
| <p>제 2 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<u>달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</u> 5인 이내로 한다.</p> <p>제 3 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</p> <p>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 할 때는 선임 위원 정수의 2 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<u>승낙을</u> 받아야 한다.</p> <p>④지방의회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⑤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제 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</p> | <p>제 2 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.</p> <p>제 3 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</p> <p>다만, 위원 중 2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 하는자로 할 수 있다.</p> <p>(삭제)</p> <p>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 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<u>승낙을</u> 받아야 한다.</p> <p>③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 |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| 현 행 | | 개 정 |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(별표 제 2 호) | | (별표 제 2 호) | |
| 구 분 | 액 수 | 구 분 | 액 수 |
| 일 비 | <u>20,000 원</u> | 일 비 | <u>50,000 원</u> |
| 여 비 | 국내 여비규정 "별표 2" 여비 지급 구분표상 부 지사 상당액 | 여 비 | 현행과 같음 |

關 係 法 令 拣 萃

地方自治法

- 제 125 조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계좌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중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제 1 항의 검사위원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地方自治法施行令

- 제 46 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법제 125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,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
- 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- 제 47 조(결산검사 사항) ①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세입·세출의 결산
2. 계속비·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
3. 재원 및 재무의 결산
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
5. 금고의 결산

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회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[1988.5.14.]
조례 제1625호]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25 조 제 3 항, 동법시행령 제 46 조 및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.

제 3 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진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.

④지방의회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한다.

⑤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 1 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 4 조(위촉기간)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②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5 조(겸임금지 및 결격) ①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,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 (대표위원)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.

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.

③ 대표위원이 유포시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 조 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

1. 세입·세출의 결산
2. 계속비,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
3. 재권 및 재무의 결산
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
5. 금고의 결산

② 지방공기업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같음한다.

제 8 조 (검사협조)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검사의견서의 제출)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일비의 지급) ①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.

다만,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일비는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.

제 11 조(일비의 계산) ①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 까지로 한다.

다만, 위촉기간만료 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.

②제 1 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.

제 12 조(여비의 지급)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제 13 조(지급기준)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 2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.

다만,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.

제 14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제2호]

| 구 분 | 액 수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 비 | 20,000 원 |
| 여 비 | 국내여비규정 "별표2" 여비지급 구분표상 부지사 상당액 |